

1. 한국방송통신대학학칙

| | | | |
|--------|------------|----|-------|
| 제정 | 1972. 3. 9 | 규칙 | 제250호 |
| 제 1차개정 | 1973. 6.22 | 규칙 | 제291호 |
| 제 2차개정 | 1974. 1. 1 | 규칙 | 제297호 |
| 제 3차개정 | 1974.12. 3 | 규칙 | 제314호 |
| 제 4차개정 | 1975.10.25 | 규칙 | 제351호 |
| 제 5차개정 | 1977. 1.17 | 규칙 | 제455호 |
| 제 6차개정 | 1977.12.29 | 규칙 | 제474호 |
| 제 7차개정 | 1980. 3.31 | 규칙 | 제523호 |
| 제 8차개정 | 1981. 4.27 | 규칙 | 제495호 |
| 제 9차개정 | 1982. 2.19 | 규칙 | 제 30호 |
| 제10차개정 | 1983. 1. 5 | 규칙 | 제 44호 |
| 제11차개정 | 1983. 3.15 | 규칙 | 제 46호 |
| 제12차개정 | 1984. 5.30 | 규칙 | 제 90호 |
| 제13차개정 | 1985. 1.15 | 규칙 | 제116호 |
| 제14차개정 | 1985. 6.12 | 규칙 | 제121호 |
| 제15차개정 | 1985.10. 7 | 규칙 | 제127호 |
| 제16차개정 | 1987. 2. 7 | 규칙 | 제151호 |
| 제17차개정 | 1987. 5.29 | 규칙 | 제159호 |
| 제18차개정 | 1988. 6.21 | 규칙 | 제173호 |
| 제19차개정 | 1989.12.11 | 규칙 | 제213호 |
| 제20차개정 | 1990.11. 8 | 규칙 | 제218호 |
| 제21차개정 | 1991.11.20 | 규칙 | 제235호 |
| 제22차개정 | 1992. 4. 8 | 규칙 | 제249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은 방송과 통신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고등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본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교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하고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수라 한다.

제 4 조(학과의 설치) 학과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제 1 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본 대학 및 각 협력학교의 교육환경과 수용능력등 여건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 5 조(전임교원의 소속) 본 대학의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그 전공에 따라 1개학과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제 6 조(학생의 소속) 본 대학의 학생은 본 대학의 1개학과에 한하여 학적을 가지며 출석수업은 본 대학 또는 협력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한다.

제 2 장 교 육 조 직

제 7 조(설치학부및학과) ①(삭 제)

②본 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자연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③인문과학부에는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중어중문학과·불어불문학과·일어일문학과를, 사회과학부에는 법학과·행정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를, 자연과학부에는 농학과·가정학과·전자계산학과·응용통계학과·보건위생학과·(보건학전공, 간호학전공)를, 교육과학부에는 교육과·유아교육과를 둔다.

④교양과정부는 교양과목을 관장한다.

제 8 조(학과별 입학정원) 본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 학 과 명 | 입 학 정 원 |
|-------------|----------|
| 국 어 국 문 학 과 | 6,500명 |
| 영 어 영 문 학 과 | 5,200명 |
| 중 어 중 문 학 과 | 5,200명 |
| 불 어 불 문 학 과 | 3,300명 |
| 일 어 일 문 학 과 | 2,000명 |
| 법 학 과 | 6,500명 |
| 행 정 학 과 | 7,800명 |
| 경 제 학 과 | 3,900명 |
| 경 영 학 과 | 7,800명 |
| 무 역 학 과 | 2,000명 |
| 농 학 과 | 3,900명 |
| 가 정 학 과 | 5,200명 |
| 전 자 계 산 학 과 | 3,300명 |
| 응 용 통 계 학 과 | 2,000명 |
| 보 건 위 생 학 과 | 2,000명 |
| (보건학전공) | (1,000명) |
| (간호학전공) | (1,000명) |
| 교 육 과 | 2,700명 |
| 유 아 교 육 과 | 2,700명 |
| 계 | 72,000명 |

* 다만, 보건위생학과 간호학 전공은 3학년 편입학정원임.

제 9 조(학부장 및 학과장) ①각 학부에는 학부장(교양과정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되,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

②학부장은 소속학과장과 전임교원을, 학과장은 소속 전임교원을 통솔하고, 학부 및 학과에 속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③학장은 학부장에게 소관사무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부 속 시 설

제10조(부속시설) 본 대학에 방송통신교육연구소와 도서관·전자계산소·교육매체개발연구소·지역학습관 및 시·군학습관 등의 부속시설을 둔다.

제11조(부속시설의 기구조직) 제10조의 부속시설의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관 리 조 직

제12조(학장) 학장은 본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3조(행정조직) 본 대학의 행정조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다.

제14조(교무위원회) ①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사무국장·학부장과 교수회에서 선출한 5인의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③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기본운영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3. 학과의 설치·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부속시설 및 부속기관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재편찬 및 교육매체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위에서 정하지 않은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학부장회) ①본 대학의 학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장회를 둔다.

②학부장회는 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학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장이 된다.

③학부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부 및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학부장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을 교수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학부장회는 필요할 경우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교 수 회

제16조(목적)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17조(구성) 교수회는 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하되, 의장은 학장이 된다.

제18조(소집) 교수회는 의장인 학장이 소집한다. 다만, 학장은 교수

회의 구성원의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변경안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 주요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와 장학·포상·징계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교무위원의 선출 및 인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편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21조(목적)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

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계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학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27조(수당과 여비등) 본 대학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인 사 위 원 회

제28조(목적) 본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학장이 지명

하는 7인이내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30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그리고 승진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기 타 위 원 회

제32조(목적) 본 대학의 학사운영상 제반업무의 부문별 자문 및 교수회, 학부장회 소관사항의 사전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등을 비롯한 기타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3조(구성) 각 위원회는 전임교수 및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7인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학장이 임명한다.

제34조(소집) 각 위원회는 학장의 자문 또는 제15조 제 5 항에 따른 학부장회의 심의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교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각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사항에 속할 경우, 학장이 반드시 해당위원회를 소집 사전 심의토록 한다.

제35조(기타)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년과 학기 및 출석수업 일수

제36조(학년과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다음과 같이 매학년 2학기로 한다.

제 1 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제 2 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말일

제37조(출석수업) ①출석수업은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도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출석수업은 2.3학년에 대하여 매학년 10일 이상 실시 한다. 다만, 1.4학년과 학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출석수업을 갈음할 수 있다.

③출석수업은 본 대학, 협력학교 및 기타 장소에서 실시하며 학생은 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입학과 등록

제38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제 1 호에 준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40조(입학전형) 본 대학의 입학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기준은 학장이 따라 정한다.

제41조(입학지원 구비서류와 전형료) ①입학지원에는 지원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2.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다만 부득이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②이미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2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납입금을 불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재학생은 매학기초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학장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수강신청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편입학) ①편입학은 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본 대학에서 구성하는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건위생학과 간호학전공은 3학년 편입학 정원을 모집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현직교원 재교육을 위하여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의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편입학 학년은 편입학전에 수학한 대학(교)에서 교과목별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할 학과에 설정된 교과목별 학점 등에 관하여 제 1 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의 2(재입학) ①제59조 제 3 호 및 제 4호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때 입학당시 재학연한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 자격 및 시기, 방법등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수업 및 재학연한, 교과과정, 학점 및 졸업

제45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신입생 10년, 2학년편입생은 9년, 3학년편입생은 8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상을 재학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학력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 1 항에 규정된 재학연한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②일반교양과목과 각 학과의 교과과정표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방송강의 및 출석수업시간표) 방송강의 시간표는 매학기 개시전에 학장이 결정하여 공포하고, 출석수업 시간표는 각 협력학 교장이 개강전에 정하여 공고한다.

제49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방송교육, 통신교재 교육 및 출석수업을 종합하여 1학기간 1주 1시간에 해당하는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50조(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매학기 이수학점은 18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1.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이상일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제51조(학점별 학년구분) 학점에 의한 학년구분은 다음과 같다.

| 취 득 학 점 | 학 년 구 분 |
|---------------------------|---------|
| 35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 1 학 년 |
| 35학점을 초과하여 70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 2 학 년 |
| 70학점을 초과하여 105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 3 학 년 |
| 10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 | 4 학 년 |

제52조(졸업학력평가시험 및 졸업논문제출) ①설치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졸업학력 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 제출의 방법에 의한다.

②졸업학력평가시험은 전공4과목으로 실시하며, 졸업논문제출대상자는 평점평균 C⁻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졸업학력평가시험 및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의 2(졸업·졸업증서 교부 및 학위수여) ① 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력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1)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학력평가시험 또는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학 과 | 학 위 | 학 과 | 학 위 |
|--------|------|------------------------------|--------------|
| 국어국문학과 | 문학사 | 무역학과 | 경제학사 |
| 영어영문학과 | 문학사 | 농학과 | 농학사 |
| 중어중문학과 | 문학사 | 가정학과 | 가정학사 |
| 불어불문학과 | 문학사 | 전자계산학과 | 이학사 |
| 일어일문학과 | 문학사 | 응용통계학과 | 이학사 |
| 법학과 | 법학사 | 보건위생학과 (보건학전공) (간호학전공) | 보건학사 간호학사 |
| 행정학과 | 행정학사 | 교육과 | 교육학사 |
| 경제학과 | 경제학사 | 유아교육과 | 교육학사 |
| 경영학과 | 경영학사 | | |

②(삭제)

③(삭제)

④학칙 제45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조기이수자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시험과 성적

제53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

한다.

제54조(성적평가) ①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성적, 출석수업을 통한 평가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또는 중간고사 성적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석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필답고사성적과 과제물 평가성적 또는 중간고사성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평가하며 교과목 특성상 실기 또는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매학기의 출석수업중에 실시한다.

③과제물은 교과목별로 지정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매학기의 교과목별 출석수업에서 4분의1이상 결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출석수업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55조(등급의 평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 <u>등</u> <u>급</u> | <u>평</u> <u>점</u> |
|----------------------|-------------------|
| A ⁺ | 4.3 |
| A ⁰ | 4.0 |
| A ⁻ | 3.7 |
| <hr/> B ⁺ | <hr/> 3.3 |
| B ⁰ | 3.0 |
| B ⁻ | 2.7 |
| <hr/> C ⁺ | <hr/> 2.3 |
| C ⁰ | 2.0 |
| C ⁻ | 1.7 |
| <hr/> D ⁺ | <hr/> 1.3 |
| D ⁰ | 1.0 |
| D ⁻ | 0.7 |
| <hr/> F | <hr/> 0.0 |

제56조(성적사정) ①각 교과목의 성적은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미 이수한 F성적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②(삭제)

제13장 휴학·복학 및 제적

제57조(휴학) ①학생이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된다. 다만, 계속해서 4개학기 이상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58조(복학) 휴학처리된 자는 등록기간중에 등록함으로써 복학처리된다.

제59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

1.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3. 정당한 사유의 제출없이 계속해서 4개학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원에 의하여 자퇴한 자.

제14장 학생 활동

제60조(학생회설치)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역량의 배양 및 인격함양과 본 대학 교육이념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운영 및 활동원칙) 학생회는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의 2(학생대표자격)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중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제62조(회비) ①본 대학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생회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학생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회 지도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학생들의 씨클활동등은 학생회 산하단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학생회 산하단체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4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 대학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활동 및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포상 및 징계

제66조(포상) ①학생으로서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 ①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기간 중에는 징계권의 일부를 각 협력학교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제명으로 구분하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본대학 또는 타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16장 납입금

제68조(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

③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9조(수업료 면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0조(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

제71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장 장 학

제72조(장학금) ①본 대학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위탁생 및 공개강좌

제73조(위탁생) ①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속장관이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탁생으로 추천한 경우와, 교육부 산하교육기관 및 교육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중, 교육부장관이 추천하였을 때에는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위탁생이 수학중 징계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

제7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에 교양 또는 직무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을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기 타

제75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2.3.9.대학 1010-411)

이 학칙은 197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6.22.학무 1010-197)

이 개정학칙은 1973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사정에 있어 이 학칙개정 이전에 취득한 A,B,C,D는 그 실점에 따라 개정학칙의 등급과 평점을 참작하여 해당등급으로 사정한다.

부 칙(1974.1.1.학무 1041.3-7240)

이 개정학칙은 197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학무 1010-1212)

①(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 87-100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1975.10.25.대학 1010-1339)

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17.학무 1010-6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은 1977학년도 입학자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12.29.학무 1010-1717)

이 학칙은 197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3.31.방송 1070-1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2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 3 조의 규정은 197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4.27.방송 1070-96)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하여 전문대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이 학칙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입학 할 수 있는 연한에 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82.2.19.사회 1070-110)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 8 조에 규정한 학과별 입학 및 학년정원중 3학년 편입학정원은 1982학년도에 한하여 모집한다.

부 칙(1983.1.5.청년 1070-2)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1982학년도 3학년에 편입학자의 졸업 기준학점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학점이상으로 한다.

③(학과별 입학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별 입학정원중 중국어과

및 불어과는 1984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 ④(재학년한에 대한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본 학칙의 적용을 받고,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988년 2월말일까지 재학할 수 있다.

부 칙(1983.3.15.청년 1070-88)

이 학칙은 198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5.30.청년 1070-225)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3호의 규정은 198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산통계학과 재적학생은 전자계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전문대학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문대학과정(유아교육과 제외)에 재적중인 자는 1985학년도부터 본 대학 학사과정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편입학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대학과정의 졸업을 원하는 자는 그 졸업을 인정하며, 1984년 12월말까지 별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대학과정 학생의 학사과정편입학에 따른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해당학과에 그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85.1.15.사회 25210-23)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6.12.사회 25210-311)

이 학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0.7.사회 25210-496)

이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 3 호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2.7.제도 25210-3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5.29.제도 25210-14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6.21.제도 25210-15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8.제도 25210-367)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등교육과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전에 입학한 초등교육과 재적생은 1994년 3월 1일 이후에는 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전문과정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1989학년도 이전 전문과정(유아교육과)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연한(5년)의 범위내에서 1994년 2월말까지 재학한다.
②수업연한, 이수학점, 학점별 학년구분, 성적사정, 졸업증서교부등은 이 학칙 시행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90.11.8.제도 02560-35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9.제도 2562-234)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전문대학과정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9학년도 이전 전문대학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연한(5년)의 범위내에서 이 학칙 시행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92.4.7.제도 2562-145)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출석수업, 수업연한, 이수 학점 및 학점별 학년구분은 이 학칙 시행전의 제37조 제 2 항, 제45조 제1항 제50조 제 2 항 및 제51조를 적용하고, 이 학칙 공포당시에 선출된 학생대표는 제61조의 2 제 1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1)

제 호

졸업증서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19 년 월 일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장 (인)

위는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199 년 월 월 일

교 육 부 장 관 (인)

학위등록번호 : _____

(별지서식 2)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전공)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19 년 월 일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장 (인)